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 . . . (제 회)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최교진 (교육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현재 지방대학은 입학자원 감소, 지역 소멸 등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이에 대응하고자 임계 규모(Critical Mass) 확보를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국립대학 간, 국-공립대학 간 통폐합 논의가 활발한 상황임.

2026년 3월 1일 강원대학교와 국립강릉원주대학교가 강원대학교로, 국립목포대학교와 전남도립대학교가 국립목포대학교로, 국립창원대학교와 경남도립거창대학, 경남도립남해대학이 국립창원대학교로 통합 출범을 앞두고 있는바, 통합에 따른 명칭 및 직제 변경 사항을 각각 반영하고, 폐지되는 각 대학의 학생·교직원 보호 등을 위한 경과조치를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대학 통폐합에 따라 현행 학교 명칭 및 부설학교의 소속을 변경하고, 과·담당관 및 행정실 설치 범위 등 직제 관련 변경 사항을 반영
(별표 1, 별표 5, 별표 6, 별표 6의 3, 별표 8, 부칙 제6조~제7조)
- 나. 통폐합으로 폐지되는 대학의 학생 보호를 위한 기존 학제 존속 기한 설정, 교원 및 조교, 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등 규정(부칙 제2조~제5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2026. 1. 9. ~ 2. 4.)

3) 행정규제 : 규제심사 비대상

대통령령 제 호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 중 국립강릉원주대학교란을 삭제한다.

별표 5 중 국립강릉원주대학교란을 삭제하고, 같은 표 강원대학교의 부설학교명란에 “부설유치원”을 추가한다.

별표 6 중 국립강릉원주대학교란을 삭제하고, 같은 표 강원대학교의 과·담당관란 중 “16”을 “32”로 하며, 같은 표 국립목포대학교의 과·담당관란 중 “9”를 “12”로 한다.

별표 6의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8 중 국립강릉원주대학교란을 삭제하고, 같은 표 강원대학교의 행정실란 중 “12”를 “11”로 하고, 같은 표 국립목포대학교의 행정실란 중 “4”를 “1”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되는 국립강릉원주대학교의 학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국립강릉원주대학교에 재적 중인 학생과 이 영 시행

전에 같은 학교에 입학할 허가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2032년 2월 29일
까지(6년제는 2034년 2월 28일까지) 같은 학교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중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강원대학교의 학생으로서 졸업하는 것을 희망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강원대학교의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강원
대학교의 학생으로서 졸업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로 같은 항에 따른 기한 내에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사람은 다른 대학이나 강원대학교에 편입학할 수 있다.
이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편입학
하려는 학교에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국립강릉원주대학교에 소속된 공무원은 강원대학교
소속의 공무원으로 본다.

제3조(폐지되는 전남도립대학교의 학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전남도립대학교에 재적 중인 학생과 이 영 시행 전에 같은
학교에 입학할 허가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2032년 2월 29일까지 같은
학교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관계 법령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립목포대학교의 학생으로서 졸업하는 것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립목포대학교의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목포대학교의 학생으로서 졸업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로 같은 항에 따른 기한 내에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사람은 다른 전문대학이나 국립목포대학교에 편입학할 수

있다. 이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편입학
하려는 학교에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전남도립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과 조교는
국립목포대학교 소속의 교원과 조교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해 교원과 조교의 정원은 대통령령 제0000호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에 따라 2030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둔다.

⑤ 전남도립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과 조교의 보수에 대해서는
중진의 전남도립대학교 소속 교원과 조교의 호봉을 고려하여 교육부
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⑥ 이 영 시행 당시 전남도립대학교 소속의 지방공무원(교원과 조교는
제외한다)은 대통령령 제00000호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에 따라 국립목포대학교에 증원되는
일반직 공무원의 정원의 범위에서 국립목포대학교 소속의 국가공무원
으로 경력경쟁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직원의 정원은 대통령령
제0000호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에 따라 2030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둔다.

제4조(폐지되는 경남도립거창대학의 학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경남도립거창대학에 재적 중인 학생과 이 영 시행 전에
같은 학교에 입학할 허가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2032년 2월 29일까지
같은 학교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관계 법령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립창원대학교의 학생으로서 졸업하는 것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립창원대학교의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창원대학교의 학생으로서 졸업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로 같은 항에 따른 기한 내에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사람은 다른 전문대학이나 국립창원대학교에 편입학할 수 있다. 이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편입학하려는 학교에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경남도립거창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과 조교는 국립창원대학교 소속의 교원과 조교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해 교원과 조교의 정원은 대통령령 제0000호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에 따라 2030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둔다.

⑤ 경남도립거창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과 조교의 보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경남도립거창대학 소속 교원과 조교의 호봉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⑥ 이 영 시행 당시 경남도립거창대학 소속 지방공무원(교원과 조교는 제외한다)은 대통령령 제00000호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에 따라 국립창원대학교에 증원되는 일반직 공무원의 정원의 범위에서 국립창원대학교 소속의 국가공무원으로 경력경쟁 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직원의 정원은 대통령령 제0000호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에 따라 2030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둔다.

제5조(폐지되는 경남도립남해대학의 학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경남도립남해대학에 재적 중인 학생과 이 영 시행 전에 같은 학교에 입학할 허가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2032년 2월 29일까지 같은 학교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립창원대학교의 학생으로서 졸업하는 것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립창원대학교의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창원대학교의 학생으로서 졸업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로 같은 항에 따른 기한 내에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사람은 다른 전문대학이나 국립창원대학교에 편입학할 수 있다. 이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편입학하려는 학교에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경남도립거창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과 조교는 국립창원대학교 소속의 교원과 조교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해 교원과 조교의 정원은 대통령령 제0000호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에 따라 2030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둔다.

⑤ 경남도립남해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과 조교의 보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경남도립남해대학 소속 교원과 조교의 호봉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⑥ 이 영 시행 당시 경남도립남해대학 소속 지방공무원(교원과 조교는

제외한다)은 대통령령 제00000호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에 따라 국립창원대학교에 증원되는 일반직 공무원의 정원의 범위에서 국립창원대학교 소속의 국가공무원으로 경력경쟁 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직원의 정원은 대통령령 제00000호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에 따라 2030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둔다.

제6조(국립목포대학교 및 국립창원대학교에 관한 특례) 국립목포대학교 및 국립창원대학교는 2030년 2월 28일까지는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6의3의 범위에서 과 및 담당관을 추가로 둘 수 있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 비고 제1호다목 중 “국립강릉원주대학교”를 삭제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1] 1. 대학			[별표1] 1. 대학		
학교명	소재지		학교명	소재지	
국립강릉원주대학교	강원특별자치도		국립강릉원주대학교	강원특별자치도	
[별표5]			[별표5]		
학교명	부설학교명	위치	학교명	부설학교명	위치
국립강릉원주대학교	부설유치원	강원특별자치도	국립강릉원주대학교	부설유치원	강원특별자치도
강원대학교	부설고등학교	강원특별자치도	강원대학교	부설유치원 부설고등학교	강원특별자치도
[별표6]			[별표6]		
학교명	과·담당관		학교명	과·담당관	
국립강릉원주대학교	10		국립강릉원주대학교	10	
강원대학교	16		강원대학교	32	
국립목포대학교	9		국립목포대학교	12	
[별표8]			[별표8]		
학교명	행정실		학교명	행정실	
국립강릉원주대학교	5		국립강릉원주대학교	5	
강원대학교	12		강원대학교	11	
국립목포대학교	4		국립목포대학교	1	

[별표 6의3] 신설

대학의 하부조직에 두는 과 및 담당관의 추가 설치범위(대통령령 제 000호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6조 관련)[적용일자 : 2030년 2월 28일까지]

학교명	과 · 담당관
국립목포대학교	1
국립창원대학교	2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과	
연 락 처	(044) 203 - 6920

참고 **타법 개정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

국립대학 교원 등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원)

호봉	봉급	호봉	봉급
1	2,299,000	21	4,523,200
2	2,371,300	22	4,662,300
3	2,444,200	23	4,843,600
4	2,516,400	24	5,024,400
5	2,589,300	25	5,205,300
6	2,669,100	26	5,385,800
7	2,748,700	27	5,566,300
8	2,828,700	28	5,746,900
9	2,948,700	29	5,884,300
10	3,068,700	30	6,021,800
11	3,188,900	31	6,159,100
12	3,308,400	32	6,296,500
13	3,427,700	33	6,434,000
14	3,547,100		
15	3,687,100		
16	3,827,000		
17	3,966,300		
18	4,105,600		
19	4,245,600		
20	4,384,200		

비고

- 국립대학 총장의 봉급은 학생의 정원(5천명을 기준으로 한다), 학교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매년 교육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되, 고정급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봉급을 지급한다. 다만, 제8조와 제9조에 따라 획정한 호봉의 봉급이 많은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호봉을 적용한다.
 - 가. 삭제 <2022. 11. 8.>
 - 나. 국립목포해양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육대학 총장: 9,127,800원
 - 다. **국립강릉원주대학교**, 강원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 국립공주대학교, 국립군산대학교, 국립금오공과대학교, 국립목포대학교, 국립부경대학교, 국립한밭대학교, 부산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국립순천대학교, 국립경국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국립창원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국립한국해양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경국립대학교 총장: 9,293,500원
-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사편찬위원회, 중앙교육연수원, 국립국제교육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및 대학교에 근무하는 장학관·교육연구관과 부교육감인 장학관의 봉급은 대학교원 봉급단의 해당 봉급으로 한다.
- 조교의 봉급은 해당 호봉의 봉급에서 138,800원을 뺀 금액으로 하되, 전문대학의 조교 중 별표 15 제6호에 따라 획정한 호봉이 없는 조교의 봉급은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에서 211,400원을 뺀 금액으로 한다.